

기 관 명

수신자

제목 **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**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6항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(비지급대상)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전직지원금		[] 지급대상 [] 비지급대상		결정통지서	
신청인	등록번호	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
	주소				
	전화번호			휴대전화번호	
결정내용		[] 지급대상 [] 비지급대상			
지급신청일			지급대상기간	~	
비지급대상 사유					
<p>[이의신청 안내]</p> <p>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					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 팩스 ()

/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